



UR협상 완전 타결

— 돼지고기, '97년 완전 개방

지난 7년동안 계속돼오던 UR협상이 지난 12월 15일 완전 타결되어 냉장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돈육제품이 '97년 7월 1일부터 완전개방되게 되었다.

한미양국 농무장관은 지난 12월 12일부터 제네바 GATT본부에서 쌀을 비롯한 14개 주요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협상을 갖고, 돼지고기와 주요농산물의 수입 개방합의사항에 관한 합의서를 GATT에 제출했다.

UR협상 타결내용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97년 7월 1

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95~'97년 3년간은 쿼터제에 의해 3~5%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또한 '95년에 '92년 국내 돈육 소비량의 3%인 21,930톤(지육기준), '96년엔 4%인 29,240톤, '9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5%인 18,275톤을 현행관세 25%를 적용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95년엔 17,544톤, '96년 23,392톤, '97년 14,620톤이 되며 90kg기준 생돈으로 환산

〈주요농작물 수입 개방 조건〉

쌀	- '95~2004년까지 1~4% 최소시장접근 방식 허용(10년간 관세화 유예, 2005년 이후의 관세는 2004년에 다시 협상) - '95년 1%, '96~'99년까지 매년 0.25%, 2000~2004년까지 매년 0.5%씩 수입물량 증가
쇠고기	- '95년부터 쿼터제 확대(관세 20%) - 2001년부터 완전 개방(관세 43.6%)
돼지고기	- '97년 7월 1일 이후 완전개방 - 단, 관세율 소폭인상, 돼지고기(25→33%), 닭고기(20→30%)('95, '96년 쿼터제 도입)
유제품	- 유장분말 '97년 7월 1일 이후 완전개방(관세율 40→90%로 인상) - 치즈, 버터는 현행 관세율(40%)로 개방 - 분유, 고을관세화 추진
감귤	- '95, '96년 쿼터할당, '97년 7월 이후 개방(관세율 99%) - 오렌지 쥬스액, '97년 7월 1일 이후 완전 개방(관세율 60%)
고추, 마늘, 참깨	- '97년 7월 이후 현행관세로 완전 개방 - 단, 수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실링관세장치(관세상한치) 마련
보리,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 '95년 이후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화 수입 개방

하면 '95년 378,100두, '96년 504,130두, '97년 315,080두이다. 공휴일을 뺀 평일 기준으로 할 경우 '95년엔 1일 1,260두, '96년엔 1,680두, '97년엔 2,100두씩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 국내 돼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기간중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물량도 크게 늘어나 돼지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양국은 이밖에도 '97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를 전면 개방하고 관세를 33%로 하며 점차 관세율을 낮춰 2004년에는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쇠고기는 '95년부터 쿼터제를 확대하여 금년의 9만9천톤에서 2000년에는 22만5천톤까지 늘리고 2001년부터는 관세를 20%에서 43.6%로 확대하여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입쇠고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현재 44%에서 70%~80%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이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한우사육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는 돼지고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개방되며, 단지 '97년부터 현행관세율 20%를 30%로 높이기로 했다.

쌀의 경우는 개방조건이 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오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소비량의 1~4%까지 수입키로 확정됐다.

또 감귤은 오는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되고 이중 생과는 99%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95년부터 전면개방 이전까지 생산량의 2~3%를 쿼터제로 배정할 방침이다.

유제품은 유장분말의 경우 현행세율 40%를 99%로 인상하고 분유는 200% 정도의 고율관세를 매겨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밖의 고추, 마늘, 양파, 참깨는 관세율을 100% 이상 부과하는 실링관세를 적용해 '97년 7월부터 전면 개방하며 수입이 늘어날 경우는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저지 절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 김동열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장 등 8명)는 지난 12월 7일 서울역에서 3만여명의 농민과 시민, 재야 학생 등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을 격렬히 반대했다.

범대위는 이날 결기대회에서 아직 UR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며 정부에 대해 「수입개방 이행 계획서」의 제출을 연기하고 내년 4월까지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 쌀개방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 쌀개방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의 고발과 국민소환운동 전개, ▲ 미국의 수입개방 강요철회,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대세론을 조작하는 언론의 각성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수입농산물 화형식과 신농정 장례식을 갖고 초상화 대신 돼지고기와 쇠고기, 쌀 등 15개 기초농산물의 명폐를 들고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양축농가 누구나 영농조합법인 설립 가능

— 정부, 농발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앞으로 양축농가는 누구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2월 1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그동안 농지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소유자와 돼지 200두이하 사육농가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농지소유 면적이나 돼지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농민 누구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은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했다. 또한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금출자는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7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3,300m²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원을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늘리고, 동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국 축산분뇨 처리시설 84개소 신설

– ’97년까지 3천5백61억원 투자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전국에 84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양축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양이 ’92년 현재 전체 축산폐수의 56%에 달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9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임진강, 안성천 유역 29개소, 낙동강, 금호강 유역 25개소, 금강, 만경강 유역 17개소, 영산강, 섬진강 유역 13개소) 총 84개소로 확정하였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돼지 200두 이하, 소 30두

이하의 영세양축농가도 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약사법개정안 국회보사위 통과

– 동물약품 유통구조의 변화 예상

지난 12월 13일 국회 보사위원회는 수의사의 동물약품판매권 부여가 포함된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수의사도 동물약품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약사법 제72조의 6(동물용의 약품에 대한 특례)에 제4항을 신설,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법 제35조(의약품 판매업 허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사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으나,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부칙의 시행시기는 본회의 통과후 3개월에서 6개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동물병원개설자의 동물약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동물약품 취급약국 등 동물약품 업계의 유통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민신문, 육류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워크샵 개최

– 12월 2일, 3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한국농어민신문(사장 : 황의충)은 지난 12월 2일과 3일 이틀동안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회 육류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전략개발 워크샵을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김동열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이나 호주, 덴마크 등의

육류수출국들은 치밀한 전략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우리 시장을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축산인은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김달중 축산물 유통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돼지고기는 최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수출에 대한 전략을 적극 개발하여, 품질향상과 현대적인 도축·가공시설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는 축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비롯한 30여개 업체들이 참석하여 축종별 수출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보사부, 검사대상농약 105종으로 확대

보사부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쌀을 비롯한 수

입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56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38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농산물로 확대하면서 대상농약도 10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입쌀에 대한 농약검사 항목을 현행 24종에서 58종으로 확대하고 저장 및 장기운송 과정에서 살포되는 각종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수입을 막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한 아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B.M.B 등 16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설정, 수입 축산물에 대한 농약 피해를 가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 및 칠면조 고기 등 현재 5종의 식육에만 설정된 항생제 잔류기준을 면양, 산양 및 말고기 등에도 확대하고, 2월까지 추가된 3종의 식육별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UR협상관련 용어 설명〉

1. 실링관세

‘92년 이후에 개방됐거나 개방될 품목중에서 관세율이 이미 양허된 품목에 대해 최고 100%까지의 관세를 높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개념은 지난 ’91년말 마련된 둔켈안에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다.

2. 최소시장 접근방식

최소시장 접근폭이 1~4%라는 것은 개방하는 첫해 국내 소비량의 1%만을 수입하고 점차 수입량을 늘려 마지막 해에는 4%까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한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한다.

최소시장접근 기간을 설정한 배경은 수입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개방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한 기간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중에도 수입품에 관세는 부과되며 관세는 매년 낮추어야 한다.

3. 관세화 개방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수입해오던 품목에 대해 각종 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나타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모두 관세로 전환시켜 가격장벽으로 보호해주는 대신 관세이외의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처음 책정된 관세화 수준을 향후 합의된 기간 안에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도록 되어 있다.